

의안번호 제157호

논산시 이·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논산시장
제출연윌일	2020. 11. 16.

논산시 이·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제157호 제출연월일: 2020. 11. 16. 제 출 자:논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○ 국민권익위원회의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'이·통장 자녀장학금 제도운영의 공정성 제고'방안 권고

⇒ 권고과제 : 투명하고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 기준 마련

2. 주요내용

- 자녀 장학금 자격 대상을 "논산시장으로부터 효행상을 수상한 자"에서 "기관장 등으로부터 수상을 받은 자"까지 확대 지급함으로써 이· 통장의 사기진작 제고(안 제2조제4호)
- 심사항목, 항목별 비중, 구간별 차등화된 배점 등 장학생 선발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선발기준 마련(안 제4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참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타사항

1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(2020. 10. 5.)

2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안 없음(2020. 10. 8.)

3)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 아님(2020. 9. 23.)

4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0. 9. 17. ~ 2020. 10. 08. (21일간)

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5) 비용추계서 : 붙임 참조

6) 충청남도 소관실과 :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

□ 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시 이·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이 ·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"직전 연도 논산시장으로부터 효행상을 수상한 자"를 "기관장 등으로부터 수상을 받은 자"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"일정 기준"을 "평가 기준(별표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지급규모를 결정하여 읍·면·동장의 추천을 받아 성적순"을 "읍·면·동장의 추천을 받아 평가 기준(별표)의 높은 득점순" 으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	소	관 부 서		성		명
이 이	행 7	정 지 원 3	과 장	김	병	þ
안	행	정 팀	장	०]	영	인
자	담	당	자	o] (74	화 6-52	영 15)

평 가 기 준

1. 총점 배분

계	이 · 통장 경력	학업성적 또는 특기 등	이 · 통장 상훈
100	50	40	10

2. 항목별 심사기준

가. 이 · 통장 경력

근속연	!수	7년이상	6년이상 7년미만	5년이상 6년미만	4년이상 6년미만	3년이상 4년미만	1년이상 3년미만
점	수	50	45	40	35	30	25

나. 학업성적 또는 특기 등

학업 성적	재적학년 정원의 50/100이내	10%이상	20%이상 10%미만	30%이상 20%미만	40%이상 30%미만	50%이상 40%미만
우수 분야	재학기간 학과성적 C+ 이상	A+	A ~ A-	B+	B ~ B-	C+
7	점 수	40	30 20		10	5
또]·체능, 는 기능 -기 분야	도단위 이상 기능 및 예체능 대회 1위	도단위 이상 기능 및 예체능 대회 2위		도단위 이상 기능 및 예체능 대회 3위	
7	점 수	40	30 20			20
수	상 분야	기관장 등으로부터 수상을 받은 자				
7	점 수	40				

다. 이 · 통장 상훈 :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, 상위 훈격 1개만 인정

훈 격	대통령	국무총리	장 관	시 장
점 수	10	9	8	7

□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장학생의 자격) 장학생은 이 ·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사	
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	
어야 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도단위 이상 기능 및 예·체능 대회 3위 이상 입상자 및 직전	4기관
연도 논산시장으로부터 효행상 을 수상한 자	
제4조(선발) ① 시장이 읍·면·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	제4조(선발) ①
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<u>일정</u>	<u>평가</u>
<u>기준</u> 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고등학교 장학생을 우	<u>기준(별표)</u>
선 선발한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대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장	③
학생의 연간 장학금 지급규모를 판단하여 결정한 후 예산의 범위	
내에서 지급규모를 결정하여	<u>읍</u> ·면·동장의 추천을
읍·면·동장의 추천을 받아 성적	받아 평가기준(별표)의 높은
<u>순</u> 으로 선발한다.	<u>득점순</u>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 (별표)	(발표) J 명 가 기 준 J 1 총검 배분 J
	계기 이 · 통장 경태기 학업성적 또는 독기 등』 이 · 통장 상훈기
	100 0 50 0 40 0 10 0
	2. 항목별 심사기준고 가. 이 · 통장 경력고 근속연수 7년의장리 6년의장리 6년의장리 3년의장리 1년의장리 7년의장리 6년의장리 6년의장리 3년의장리 3년의장리 3년의장리
	須 七キ 20カ 42カ 40カ 82カ 30カ 52カ
	나. 학업성적 또는 특기 등고
	학급 · 생원의 - 10%이상 - 20%이상 - 30%이상 - 40%이상 - 50%이상 - 40%미만 - 20%미만 - 20
	우수. 제하기간 나 뿐야. 아파성적 A+ J A - A- J B+ J B - B- J C+ J C+ 이상 J
	引 수가 40가 30가 50가 10가 2가
	예·제농. 」 또는 기능고 무기 분야고 무기 분야 그 1위고 2위고 2위고 3위고 1위고 2위고 2위고 2위고 2위고 3위고 2위고 2위고 2위고 2위고 2위고 2위고 2위고 2위고 2위고 2
	전 수 40 30 10 20
	수상 분야니 기관장 등으로부터 수상을 받은 자리
	40 中 中 中 中 中 中 中 中 中 中 中 中 中 中 中 中 中 中 中
	다. 이 · 통장 상훈 :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, 상위 훈곀 1개만 인정되
	훈 계리 대통령리 국무총리리 장 관리 시 장리
	전 수기 10기 9기 8기 7기

비용추계서

-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 - O 해당없음
- 2. 비용추계결과
 - 가. 추계의 전제 : 해당없음
 - 나. 추계 결과(산출기초 등) : 해당없음
- 3. 작성자

행정지원과장 김 병 호

참고

상위 및 관계법령 (발췌)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